

# 대학소통위원회 규정

□ 제정 : 2017. 05. 01

**제1조(목적)** 본 규정은 구성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대학의 건학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,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하여 수원대학교 대학소통위원회를 설치하고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은 교원, 직원, 학생 중에서 총장이 임명 하며, 각 구성단위의 정원과 구성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교원: 3명(교수, 부교수, 조교수 각 1명)
2. 직원: 3명(과장, 계장·주임, 일반직원 각 1명)
3. 학생: 3명(학생회장, 단과대학 학생대표, 일반학생 각 1명)

**제3조(위원장)** ① 위원장은 총장이 지명하는 1인으로 하고,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총장이 임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.

**제4조(임기)**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대학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협의 및 논의가 필요한 사항
2. 대학 행정과 관련하여 구성원들의 의사 반영이 필요한 사항
3. 학과, 부서 등 공식 조직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학내 현안 사항
4. 구성원 간의 갈등 해결과 화합에 관한 사항
5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문제해결 능력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6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 학기말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.

**제7조(회의록)** 위원회는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결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한다.

**제8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, 간사는 직원위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**제9조(세부사항)** 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제정 규정은 201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